



보건복지부	보	도 참	卫	자 료
배 포 일	2020. 8. 19.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 략기 획 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팀 장	김 성 훈	•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저 중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공정거래위원회	과 장	류 용 래		044-200-4430
특수거래과	담 당 자	배 문 성		044-200-4438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17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보고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가 연기·취소되어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8.15 광복절 집회에서 확진자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집회발 집단감염이 심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태원 집단 감염 관리 경험을 살려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게 당부하였다.
 - 아울러,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역학조사 등에 대하여 저항·방해한 행위는 온당치 않은 행동이므로, 서울시·복지부 등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수도권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되지만 유통물류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결코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에게 유통물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하면서, 확진자 분류 시부터 경증·무증상·중증 등을 엄격하게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하여 치료할 것을 방역당국에게 강조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원구 안디옥교회에도 즉시 대응반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 8월 19일(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유흥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 실태를 단속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집한제한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온라인예배 전환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8월 18일(화)부터 경기도 내 거주자·방문자는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 더불어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8월 8일과 8월 15일 경복궁, 광화문 지역 방문 자는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2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보고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8월 19일 부터 9월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지자체를 통하여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 홍보관 현황자료**와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한다.
 - 공정위 및 지자체는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 8월 19일부터 영업이 중단되는 수도권 방문판매 지점·홍보관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영업 중단 여부 및 집합금지 명령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중장년층 방문 자제를 지속 전파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3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 □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예시) 자격시험의 경우 공간이 분할되고 상호 간에 이동·접촉이 불가하면서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 50명 이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를 수 있음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 ① 법령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 ▲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둘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 PC방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셋째,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 한편, 8월 15일에 발표되어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 □ 한편 정부는 교계와 협의하여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 □ 강화된 방역 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시행되며, 우선 8월 30일 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 이와 함께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바란다"라고 밝혔다.











- < 붙임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2.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 음영 표시는 8.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

구분		조치사항(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중 이용 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학교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O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O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기관, 기업	22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붙임2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